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이용계약의 목적

이용계약은 서비스 당사자간에 급여종류, 급여내용, 비급여항목, 계약기간, 의무 및 권리, 등 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명확히 함으로써 서비스 제공 시 불필요한 마찰을 최소화 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급여 개시 전 이용자나 보호자와 계약 체결한다.
2.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인정등급 또는 인정유효기간 변경,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계약에 반영한다.
3.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며, 1부는 기관에서 보관한다.
4. 계약의 해지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계약 만료 전에는 계약자 간 상호 협의하여 진행한다.
5. 계약체결이나 계약 내용 변경 시 지체 없이 공단에 통보한다.



신원인수인의 의무와 권리

1. 신록노인복지센터의 의무와 권리
 - 이용자의 건강 및 신변 상태를 고려한 서비스제공계획 수립 및 이행 의무
 - 이용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 이용자의 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의무
 - 시설 등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의무
2. 이용자 및 보호자의 의무와 권리
 -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
 - 제공되는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결과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이용자의 건강 및 안전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 청구된 이용료를 납부기한까지 성실히 납부할 의무
 - 이용자의 주소, 보호자 변경 등 변동내용을 즉시 통보할 의무
 - 그 밖의 신록노인복지센터 이용과 관련된 협조 사항 이행 의무



계약의 변경 및 해제

1. 계약의 변경

-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이용료 또는 급여내용 변경을 요청할 경우 본 센터는 지체 없이 변경한다.
- 계약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고 건강보험공단에 지체 없이 보고한다.

2. 계약의 해제

이용자나 보호자가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거나,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유선 또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이용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전염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아무런 이유없이 이용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 폭력성 등으로 다른 이용자 또는 종사자에게 위협이 되는 경우
-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인정받지 못했을 경우



이용료 등 비용 변경 및 절차

1.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우편,메신저,안내장,직접 안내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 노인장기요양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비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 이용자의 건강보험 자격이 변경되었을 때
- 이용자의 건강상태,환경적 요인등으로 급여제공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 때
- 비급여비용이 변경되는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변경 사항 안내 후 익월부터 변경된 비용 적용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

1. 본 센터는 이용자의 생명, 신체, 재산의 위험이나 장애가 될 수 있는 요인을 미리 제거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합니다.
2. 이용자는 본 센터 내에서 흥기 및 자해에 이용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할 수 없으며, 위험성이 높은 물건은 직원의 관리 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시설은 이용자 및 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시행합니다.
4. 신록노인복지센터 내 이용자의 안전 및 감염예방등을 위하여 이용자 면회 시간, 면회대상자, 반입물품등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이용서비스종류 및 정원

구분	주야간보호	주간보호(내)단기	방문요양	방문목욕
정원	49명	4명	정원 없음	-
이용대상	장기요양 1~6등급 인정어르신	장기요양 1~6등급 인정 어르신	장기요양 1~5등급인정어르신	장기요양 1~5등급인정 어르신



시설현황

구분	연면적 (제곱미터)	침실	사무실 간호사실	물리 치료실	상담실	프로 그램실	생활실	목욕탕	세탁실	화장실
1층	776.1	-	1	-	1	1	2	1	1	4
2층		2		1	1	1	3	-	-	3



종사자 현황

구분	센터장	사무원	사회 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 보호사	운전원	조리원
주.야간 보호	1	1	3	1	7	1	1
방문요양		-	2	-	25	-	-



월 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

구분	단가(원)	산출근거
이용료	노인장기요양법 제 40조 본인일부부담금	
식재료비	1식 4,000	4,000원*제공횟수
간식비	1식 1,000	1,000원*제공횟수
월한도초과이용료	공단부담금과 자부담을 합한 전액	
개별용품, 기호품	수급자가 요구하는 개별용품 구입시 실제 지급한 비용	